

## ■ EU, 선박 쓰레기 해양투기 방지책 마련

### ○ EU는 항구의 선박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지침을 마련해 비용부과 방안 등을 규정함

- EU 회원국들은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선박에 적용하는 획일 요금제(no-special-fee) 혹은 항만에서 폐기처리 하는 쓰레기의 양과 형태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부과하는 차등 부과제 중에서 하나를 적용해야 함
  - 이는 ‘생산자 책임원칙’에 따라 자동차 생산자에게 폐자동차 처리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
  - 항구에서 수거되는 쓰레기 처리비용의 "상당부분" (EU 집행위원회는 최소 30%임을 명기함)을 회수할 계획임
  - 차등 부과제의 사용료는 우선 선박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부과되며, 나머지 비용은 실질적으로 항구에서 처리되는 쓰레기의 양과 형태에 따라 비용이 결정될 것임

### ○ 규정 상에 총부과비용이 ‘상당부분’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되어 향후 논란이 예상됨

-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획일 요금제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EU 의회는 징수 규모를 전체 처리비용의 최소 90%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
- 반면에 EU 집행위원회는 전체 처리비용의 최소 30% 수준이면 된다고 함
-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EU 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

### ○ 항구사용료 안에 선박쓰레기 처리비용을 포함시킴으로서 선박들의 해양 쓰레기 무단 투기가 상당 부분 감소되어 해양오염은 줄어들 것임

- EU 역내 항구를 이용하는 선박들의 항구시설 이용료 부담이 커질 것이므로 선박들은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

천 정 용(cildon@hanmir.com, 02-3669-4099)

1) 입항하고자 하는 항구에서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항구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임